KOSHA GUIDE

C - 37 - 2011

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의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중 가스관, 상수도관, 하수도관, 전력 및 전기통신시설 , 지역난방배관 등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(1) 굴착공사 시 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 후 매설물의 위치, 규격, 구조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2)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, 매설물 방호방법, 관계자의 입회, 긴급 시 연락방법, 안전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한다.